

문서번호	시장개선팀-110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8.01.19
공개여부	비공개(7)

★담당자	팀장	환경관리본부장
		01/19
김동환	강성수	윤덕인
협 조		
	부장	윤창식
감 사		

시장 내 영업 매매참가인 관련 유통인
대표자 회의 결과 보고

2018. 1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시장개선팀

시장 내 영업 매매참가인 관련 유통인대표자 회의 결과 보고

I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18.1.18.(목) 10:00~11:00 / 15층 대회의실
- ☞ 참석 : 15명(공사 5, 도매시장법인 5, 채소중도매인조합 5)
 - ※ 대리 참석 5명(도매시장법인 5)
 - ※ 한중연 서울지회장(정상균) 불참
- ☞ 내용 : 시장 내 영업 매매참가인 정비 방안 협의 결정

II 유통인 대표자 회의 상정안

○ 제 1안

방식	시장 내 영업 매매참가인 전수 일괄 조치			
정비 개요	1 단계 (당사자 전수)	2단계 (1단계 미정비자)	3단계 (2단계 미정비자)	4단계 (3단계 미정비자)
	자진정리 기간 3개월 일괄 부여	경고 처분 후 3개월 분산 제한 (06시까지)	신고철회 처분 (경매참여 불가)	주차텍 해지 등 시장 내 퇴출

○ 제 2안

방식	영업 기간별 단계별 정리기간 부여		
정비 개요	~ 3년	3 ~ 10년	10년 이상
	(합동조사 기준 : 15명) (신고일자 기준 : 20명)	(합동조사 기준 : 24명) (신고일자 기준 : 28명)	(합동조사 기준 : 24명) (신고일자 기준 : 15명)
	정리기간 3월 부여	정리기간 6월 부여	정리기간 9월 부여

○ 제 3안

방식	분산 시간 점진적 축소		
정비 개요	'18. 3월 이후	'18년 6월 이후	'18년 9월 이후
	10시까지 분산	06시까지 분산	03시까지 분산

III 회의 결과

- 제 1안으로 결정 하되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약 3개월 정도 충분히 홍보·시정조치 하고 단계별 정비 방안 적용
- 법률 검토 등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세부 실행계획(로드맵) 작성
- 필요시 실무위원회 등 추가 개최

IV 참석자 주요 의견

■ 환경관리본부장 윤덕인

-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서 서울 한복판에 있는 가락시장이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장 내 모든 질서들이 바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함
- 시장 내 영업 매매참가인 문제도 그 중 한 분야로서 원칙을 확실히 견지하며 정비를 추진할 것임
- 다만, 이들도 시장 내 오랜 기간 동안 정착해 있었던 만큼 소위 질서 있는 퇴진을 할 수 있도록 정비 방안을 실행하여야 할 것임

■ 시장개선팀장 강성수

- 금일은 매매참가인 장내 영업 정비 방안이 논의되지만 앞으로는 시설현대화 사업과 더불어 노점상 문제, 중도매인 제자리 이탈 문제 등도 정비를 추진할 것임
- 매매참가인의 자유로운 경매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 또한 농안법에 위배된 행위로서 적발될 시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것임

■ 중앙청과 채소중도매인조합장 심재중

- 시장 내 영업 매매참가인 문제에 이러한 실질적 움직임이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봄. 시설현대화사업과 맞물려 논의되는 듯 함

- 정해진 방안을 토대로 실제 정비가 추진될 때 매매참가인의 반발이 가장 우려되는 사항인 만큼 단체행동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
- 상정안에 관하여는 영업 기간별로 차등적 정리기간을 부여하는 안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 동화청과 채소중도매인조합장 이한정

- 최대한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주시기 바람

■ 농협(공) 채소중도매인조합장 오제영

- 오랜 기간 시장 내 영업을 해오던 자들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반발은 당연히 있을 것임. 그만큼 심사숙고 후 결정하여야 함
- 상정안에 관하여는 일괄 조치하는 것이 좋을 듯 함

■ 서울청과 채소중도매인조합장 김종진

- 시장 내 영업 매매참가인을 정비함에 있어 마찰이 있겠지만 향후 현대화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과정임은 유통주체 모두가 공감하리라고 생각함
- 상정안에 관하여는 제 1안에 동의함

■ 한국청과 채소중도매인조합장 한현욱

- 상정안에 관하여는 제 1안에 찬성함. 나머지 두 개의 안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함
- 공사, 도매시장법인 모두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바람

■ 중앙청과 김용운 본부장

- 매매참가인의 시장 내 영업 문제 하나만 정비하다보면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임.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도 함께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어떤 안이 되었든 중앙청과는 공사가 마련하는 안에 대해 조합과 협력하여 정비 추진에 협조하겠음

■ 한국청과 오정수 전무

- 매매참가인의 시장 내 영업행위가 문제인 것이지 매매참가인의 경매참여 자체는 불법이 아님을 명확히 함
- 이번 건을 추진함에 있어 매매참가인의 가락시장에서의 역할 및 그동안의 기여도를 충분히 고려한 정책방향이 설정되길 바램

■ 동화청과 황정석 상무

- 앞서 오정수 전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매 참여 및 분산은 위법사항이 아님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감. 단순 분산과 장내 판매를 위한 영업을 잘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모든 유통주체들이 잘 협조하고 협의하여 가락시장의 일은 가락시장 안에서 해결되는 모습이 바람직할 것임
- 공사가 마련하는 안에 대해 동화청과도 협력할 것임

■ 서울청과 강석근 상무

- 이미 서울청과에서는 영업력 있는 매매참가인이 제도권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오랜 시간 가락시장에서 농수산물 유통에 역할을 해오던 자들을 한순간에 내쫓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임

■ 농협(공) 김종경 부사장

- 농협가락공판장은 어떠한 안으로 결정이 되든 적극 동참하겠음

- 붙임 1. 회의사진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3. 회의자료 1부. 끝.

< 붙임 1 > 회의사진

2018. 1. 18.(목)



〈 붙임 2 〉 참석자 서명부

유통인 대표자 회의 참석자 서명부(2018. 1. 18)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서울시농수산물공사	환경관리본부장	윤덕인	윤덕인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시장개선팀장	강성수	강성수
서울청과	상무	강석근	강석근
농협(공)	부사장	김종경	김종경
중앙청과	본부장	김용운	김용운
동화청과	상무	황정석	황정석
한국청과	전무	오정수	오정수
서울청과 채소중도매인 조합	조합장	김종진	김종진
농협(공) 채소중도매인 조합	조합장	오제영	오제영
중앙청과 채소중도매인 조합	조합장	심재중	심재중
동화청과 채소중도매인 조합	조합장	이한정	이한정
한국청과 채소중도매인 조합	조합장	한현욱	한현욱
한국농산물중도매인 연합회 서울지회	회장	정상균	정상균

〈 붙임 3 〉 회의자료

유통인 대표자 회의자료
2018. 1. 18.(목), 10:00~



「청과 매매참가인 시장 내 영업 정비방안 수립 관련」

會 義 資 料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시장개선팀]

청과 매매참가인 시장 내 영업 정비 방안

I 추진 배경

- 매매참가인은 도매시장에서 판매 행위 불가(관리지침 제12조 4항)
- 경매 및 분산 이후에도 시장 내 영업 중인 매매참가인 존재
- 매매참가인 시장 내 영업 관련 유통주체 간 이해관계 충돌

『위원회 구성·운영, 실태 조사, 원인분석 등을 통하여 상생 및 지속 가능한 매매참가인 시장 내 영업 정비 방안 마련』

II 일반 현황

- 시장 내 영업 매매참가인 현황('17. 11. 17. 합동조사 기준)

○ 청과 매매참가인 186명 중 63명(약 34%) 시장 내 영업 중

- 도매법인별 분류

계	서울청과	농협	중앙청과	동화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63명	15	4	17	25	2	-

- 취급 품목별 분류

계	양파	감자 고구마	엽채류	오이, 호박	고추	버섯
63명	27	16	15	2	2	1

- 영업 위치별 분류

계	양파 경매장	반입복도	채소경매장	시금치경매장
63명	26	16	20	1

- 영업 기간별 분류

구분	계	~ 3년	3 ~ 10년	10년 ~
합동조사 기준	63명	15	24	24
공사신고 기준		20	28	15

III 기 추진 내역

- ▶ 공사·법인·조합 야간 합동 시장 내 매매참가인 실태조사(11월)
- ▶ 청과 매매참가인 거래질서 관리 실무위원회 회의(3회)
- ▶ 매매참가인 시장 내 영업 자진 정리 지시(12월)

■ '17. 11. 10 : 청과 매매참가인 거래질서 관리 실무위 1차 회의

- ◆ 시장 내 영업 매매참가인 합동조사 계획 초안 설명 및 의견 수렴

■ '17. 11. 15 : 도매법인 보유 기초데이터 작성 및 제출

■ '17. 11. 16 : 중도매인조합에서 도매법인 자료 기초 조사 확인 및 보완

■ '17. 11. 17 : 공사, 도매법인, 중도매인조합 합동 실태조사 실시

- ◆ 조사 시간 : 05:00 ~ 09:00
- ◆ 조사 구역 : 경매장(채소, 양파, 대파, 시금치) 및 반입·배송복도
- ◆ 조사 내용 : 시장 내 영업자 인적사항, 영업유형, 시간, 규모, 기간 등

■ '17. 11. 29 : 청과 매매참가인 거래질서 관리 실무위 2차 회의

- ◆ 시장 내 영업 매매참가인 명단 63명 확정(서울15, 농협4, 중앙17, 동화25, 한국2)
- ◆ 당사자 자진정비 지시 문서 시행 공동 합의
- ◆ 향후 정비 절차 및 방식에 관하여는 대표자 회의 상정 확정기로 함

■ '17. 12. 7 : 매매참가인 시장 내 영업 자진 정리 관련 조치

- ◆ 시장 내 영업 매매참가인 당사자 자진 정리 공문 시행
- ◆ 도매시장법인 관리구역 내 영업 매매참가인 자진 정리 협조 요청
- ◆ 중도매인조합 및 한중연 서울지회 자진 정리 관련 사항 통보

■ '17. 12. 21 : 청과 매매참가인 거래질서 관리 실무위 3차 회의

- ◆ 시장 내 영업 매매참가인 정비 관련 대표자 회의 상정안 초안 설명
- ◆ 상정 방식 및 상정안 세부 내용 관련 의견 조율 후 3개 상정안 확정

V 유통인 대표자 회의 안건

■ 사전 합의 사항

- 합동조사 후 확정된 명단 이외 시장 내 영업자 즉각 행정조치

■ 금일 협의 결정 사항

--- 시장 내 영업 매매참가인 정비 방안

- 제 1안

방식	시장 내 영업 매매참가인 전수 일괄 조치			
정비 개요	1 단계 (당사자 전수)	2단계 (1단계 미정비자) 경고 처분 후 3개월 분산 제한 (06시까지)	3단계 (2단계 미정비자) 신고철회 처분 (경매참여 불가)	4단계 (3단계 미정비자) 주차텍 해지 등 시장 내 퇴출
	자진정리 기간 3개월 일괄 부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평성을 충족하며 관리지침 등 규정 상 가장 명확한 정비 방법 · 매참인 대량 취급품목의 물량 소화문제 및 집단 반발 등 시장운영 상 혼란 우려 			

- 제 2안

방식	영업 기간별 단계별 정리기간 부여		
정비 개요	~ 3년 (합동조사 기준 : 15명) (신고일자 기준 : 20명)	3 ~ 10년 (합동조사 기준 : 24명) (신고일자 기준 : 28명)	10년 이상 (합동조사 기준 : 24명) (신고일자 기준 : 15명)
	정리기간 3월 부여	정리기간 6월 부여	정리기간 9월 부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운영 혼란 최소화를 위한 단계별 차등 정리기간 부여 · 영업기간 기준 및 구간 설정 등에 관한 근거 빈약 · 기준 설정 방식에 관한 형평성 문제 제기 가능성 		

- 제 3안

방식	분산 시간 점진적 축소		
정비 개요	'18. 3월 이후 10시까지 분산	'18년 6월 이후 06시까지 분산	'18년 9월 이후 03시까지 분산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시간까지의 영업행위는 분산으로 용인, 그 후 잔류는 시장 내 판매로 간주 · 분산과 판매행위의 구분 및 분산 후 정리에 관한 기준 모호 · 실효성과 지속성 유지가 어렵고, 과다한 인력 투입 대비 효과 미흡 		

VI 후속 조치

- 추진 일정 및 법률 검토 등 세부사항 보완 후 종합 정비 계획 수립
 - 필요시 실무위원회 개최 및 세부 정비 계획 협의
- 정비 계획에 따른 시장 내 영업 매매참가인 정비 추진
 - 기간 경과 후 시장 내 영업 매매참가인 행정조치(경고 및 신고철회)
- 시장 내 영업 매매참가인 정비 후속 조치
 - 신고 철회 후 시장 내 영업자 지속 정비
 - 도매시장법인 책임관리제 추진

장내 영업 매매참가인 정비 방안

■ 제 1 안

방식	시장 내 영업 매매참가인 전수 일괄 조치						
정비 개요	1 단계 (당사자 전수)	➤	2단계 (1단계 미정비자)	➤	3단계 (2단계 미정비자)	➤	4단계 (3단계 미정비자)
	자진정리 기간 3개월 일괄 부여		경고 처분 후 3개월 분산 제한 (06시까지)		신고철회 처분 (경매참여 불가)		주차텍 해지 등 시장 내 퇴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평성을 충족하며 관리지침 등 규정 상 가장 명확한 정비 방법 · 매참인 대량 취급품목의 물량 소화문제 및 집단 반발 등 시장운영 상 혼란 우려 						

■ 제 2 안

방식	영업 기간별 단계별 정리기간 부여		
정비 개요	~ 3년 (합동조사 기준 : 15명) (신고일자 기준 : 20명)	3 ~ 10년 (합동조사 기준 : 24명) (신고일자 기준 : 28명)	10년 이상 (합동조사 기준 : 24명) (신고일자 기준 : 15명)
	정리기간 3월 부여	정리기간 6월 부여	정리기간 9월 부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운영 혼란 최소화를 위한 단계별 차등 정리기간 부여 · 영업기간 기준 및 구간 설정 등에 관한 근거 빈약 · 기준 설정 방식에 관한 형평성 문제 제기 가능성 		

■ 제 3 안

방식	분산 시간 점진적 축소				
정비 개요	'18. 3월 이후	➤	'18년 6월 이후	➤	'18년 9월 이후
	10시까지 분산		06시까지 분산		03시까지 분산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시간까지의 영업행위는 분산으로 용인, 그 후 잔류는 시장 내 판매로 간주 · 분산과 판매행위의 구분 및 분산 후 정리에 관한 기준 모호 · 실효성과 지속성 유지가 어렵고, 과다한 인력 투입 대비 효과 미흡 				